

준 항 고 장

준 항 고 인 1. 법무법인 상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5 영생빌딩 4층

대표자 장주영, 천낙봉

2. 법무법인 향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6층

대표자 심재환

3. 법무법인 양재 강남분사무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길 5 6층(신사동)

대표자 김용민

4. 법무법인 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6층)

대표자 송정섭

5. 변호사 채희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3(로스텔빌딩504호)

6. 변호사 설창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46,601호(서초동,경원빌딩)

7. 변호사 신윤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5 4층(서초동, 엠엘빌딩)

법률사무소 단심(丹心)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5 4층(서초동, 엠엘빌딩)

전화 02-6203-1020 팩스 02-6013-3499

대표송달인 변호사 신윤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5 4층(서초동, 엠엘빌딩)

전화 02-6203-1020 팩스 02-6013-3499

피 준 항 고 인 국가정보원장

신 청 취 지

피준항고인이 2016. 5. 16. 준항고인들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구
금된 별지 목록 기재 탈북자들에 대한 접견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한다.

신 청 원 인

1. 준항고인들의 2016. 5. 16. 자 접견신청

준항고인 1.의 담당변호사 천낙봉, 장경욱, 준항고인 2.의 담당변호사 권정
호, 이재화, 오민애, 준항고인 3.의 담당변호사 김용민, 김자연과 준항고인
4.의 담당변호사 양승봉, 5, 6, 7은 2016. 5. 16.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관등성명을 밝히기를 거부한 성명불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중국 저장

법률사무소 단심(丹心)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5 4층(서초동, 엠엘빌딩)

전화 02-6203-1020 2 팩스 02-6013-3499

성 닝보시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별지 목록 기재 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접견신청서)

2. 피준항고인의 접견거부 및 형사소송법 제403조 준항고 대상적격

국가정보원 직원은 준항고인들의 위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는바,(소갑 제2호증의 1 녹취파일, 소갑 제2호증의 2 녹취록) 이는 아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의 구금에 대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합니다.

국가정보원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에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이라 합니다)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탈북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보호여부 결정을 위하여서는 위장탈출 혐의자, 즉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한 간첩(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단심(丹心)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5 4층(서초동, 엠엘빌딩)

전화 02-6203-1020 3팩스 02-6013-3499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한 간첩은 곧 국가보안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므로, 필연적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조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 성격 또한 가지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옛 명칭이 중앙합동<신문>센터였다는 점도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성격이 병존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됩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2명은 현재 구금된 상태입니다.

구금이라 함은 대상자를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억류하고 감금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자의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것이 형사소송법의 체포와 구속에 대한 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403조의 구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별지 목록 기재 12명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외부를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은 물론 어떠한 외부와도 전화, 서신 등의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 이들이 구금상태라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소갑 제3호증 신문기사 모음)

법률사무소 단심(丹心)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5 4층(서초동, 엠엘빌딩)

전화 02-6203-1020 4팩스 02-6013-3499

다. 소결

이와 같이 피준항고인의 2016. 5. 16. 준항고인들에 대한 접견거부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준항고의 대상입니다.

3. 구금 및 접견거부의 위법성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는 보호신청자의 신병을 구금할 근거 규정이 없고,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의 신병을 구금할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에 따른 체포 및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 아닌 이상 이 사건 12명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불법으로 구금하였고, 당사자인 이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주지 않은 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는 바, 위 헌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은 합법적인 것이든 불법적인 것이든 구별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인정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근거도 없고 영장도 발부된 바 없이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약 40일간 구금된 12인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에게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

법률사무소 단심(丹心)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5 4층(서초동, 엠엘빌딩)

전화 02-6203-1020 5팩스 02-6013-3499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인들에게는 이를 조력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견신청을 거부한 피준항고인의 행위는 위법합니다.

가사 백 보 양보하여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구금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구금된 이상 당연히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금의 적법성이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4. **결어**

이상의 이유로 준항고를 신청하오니 부디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접견신청서
1. 소갑 제2호증의 1 녹음파일
1. 소갑 제2호증의 2 녹취록
1. 소갑 제3호증 신문기사 모음

법률사무소 단심(丹心)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5 4층(서초동, 엠엘빌딩)

전화 02-6203-1020 6 팩스 02-6013-3499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2016. 5. 18.

위 준항고인

법무법인 상록

법무법인 향법

법무법인 양재

법무법인 을

변호사 채희준

변호사 설창일

변호사 신윤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률사무소 단심(丹心)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5 4층(서초동, 엠엘빌딩)

전화 02-6203-1020 팩스 02-6013-3499

별지. 접견대상자 목록(구금인 목록)

1. 리은경(이은경. 1979. 1. 23. 생)
2. 한행복(1989. 12. 3. 생)
3. 리선미(1990. 5. 18. 생)
4. 리지혜(리지예. 1991. 1. 1. 생)
5. 리춘(리봄. 1991. 2. 11. 생)
6. 김혜성(김혜성. 1991. 11. 11. 생)
7. 류송영(1992. 4. 13. 생)
8. 전옥향(1992. 7. 16. 생)
9. 지정화(1992. 8. 2. 생)
10. 박옥성(박옥별. 1993. 3. 7. 생)
11. 김설경(김설경. 1994. 1. 1. 생)
12. 서경아(1994. 1. 17. 생) 끝.

20160516 접견 요청 대화 녹취록

민변1: 이 안에 편지와 편지봉투가 있습니다. 밖으로 서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편지, 편지봉투를 넣었고요. 또, 신영복 선생님 책이라든가 안에 심심하신 분을 위해 책을 명치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만일 접견이라든가 제반 거부를 한 경우에서라도 저희가 서신으로 이분들이 안에서 어떤 상황에 있고 바깥 소식이라든가 신문 기사라든가 저희 변호인들의 서신을 변호인 명의로 해서 서신입니다. 바깥 소식을 알리는 서신이고, 또 여기에는 안에 있는 피구금자가 가져야할 각종 권리에 대한 알림글을 넣었습니다. 이 서신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전달한 서신이 반드시 전달되리라 생각되고요. 변호인들이 제공하는 물품들이 12분 한분 한분께 전달해주시고, 혹시나 이름이 다른 분들이 있더라도 다 특정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선센터 책임자분께서 입장을 한 번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녹취를 합시다. 녹취를 하든지, 가져가라든가, 수령을 하라, 아니면 어떤 입장을 되도록 하나 써 주시든가, 녹취를 하시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전에 불허 입장을 팩스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왔을 때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시는지, 아니면 그 입장을 철회하셔서 저희 접견을 보장해주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민변2: 그 전에 저도 한 가지 확인받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오늘 접견신청하신 열두 분이 여기 계시는 것은 맞나요? 그것부터 확인해주시겠어요? 계시는 게 맞는지.

합신: 정상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민변1: 선생님, 그럼 직책만 얘기해주시죠. 합선센터 책임자라든가.

합신: 원래 그건 못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민변1: 알겠습니다. 그러면 접견신청에 대한 입장 좀 밝혀주십시오.

합신: 접견신청, 이 모든 행위가 접견신청, 접견신청 이게 음

민변1: 그건 별개죠. 그 서류는 그럴 수 있지만.

합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접견신청을 다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변1: 예, 다시 하는 겁니다. 충분히 다시할 수 있죠. 왜냐면 시간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합신: 저희는 지난 번 심사회의에서 민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다시 그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서신에 대해서도 일종의 민원으로 제기?

민변1: 아뇨 변호인의 권리로.

합신: 하여튼 별개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서 접수를 하되,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저희 내부 규정상 위해 물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갖고 가 주시고.

민변1: 아니 스캔해서 수령하지 않으시는가요?

합신: 그 두 개 별개 행위에 대해서, 첫째 접견신청서에 대해서 다시 재신청하는 민원에 대해 접수를 하고 이후에 서신수수 뭐 서신수수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전달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변3: 여기 위험 물질이 있을지 모르니 반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민변1: 민원 접수증을 하나 해주십시오.

합신: 그럼 그 두가지 행위에 대해서

민변3: 아니. 이걸 검사를 하시고 위험물질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반입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합신: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민원으로 접수하셨으니까 그 민원에 대해 서류, 통지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민변3: 한 가지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걸 반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위험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을 못한다는 건지. 아니면 일체에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는 것인지?

합신: 위험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에서 이렇게 특히 제3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변3: 검사하시면 되잖아요?

합신: 제출한 물건에 대해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 거부하는 겁니다. 그 거부에 대해서는 오늘 민원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성의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죠?

민변1: 알겠습니다. 그럼 서신 거부. 물품 거부. 변호인이 아까 서신 있었으니까 서신도 거부하는 거죠?

합신: 그러니까 지금...

민변1: 아니 서신 있다고 여기 권리안내서랑

민변3: 아니 서신만 빼가지고

합신: 서신이든 뭐든 포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민변3: 아니 서신이 유해물질이란 말입니까?

합신: 아니 서신이든 뭐든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위는 모든 행위가 접견신청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민변3: 접견을 거부하시더라도 이거는 그분들에게 전달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합신: 그럼 물품은 가져가시고 그 서신, 물품,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호인 접견 다시 민원 제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변3: 아니 저희가 서신을 썼습니다. 지금 이 서신이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신: 그러니까 말씀 드리잖아요. 일단 민원으로 저희가 접수하고.

민변1: 서신을 접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합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민원으로 접수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 갖고 가시면 됩니다.

민변3: 이거도, 이거도? 편지거든요. 이거는 넣어주십사하는 겁니다.

합신: 물건에 대해서는 가져가 주시고.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걸 전달해 달라 하는 기타 민원으로 봐서 접수하겠습니다.

민변3: 그럼 접수 목록이나 작성해 가세요.

민변2: 그리고 한 가지.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변호인 접견 왔다는 걸 알고는 계신가요?

합신: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민변2: 모르는 건가요 밝힐 수 없는 건가요?

합신: 밝힐 수 없습니다.

민변2: 그분들의 의사는 어때요?

합신: 노코멘트입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노코멘트입니다.

민변2: 기존에는 그런 걸 다 말씀해주셨거든요.

합신: 이 자리에선 노코멘트입니다.

민변2: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건가요?

합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민변2: 그럼 바뀐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합신: 알려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민변1: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자필로라도 이 물품 목록이라도 확인 좀 해주셔야지.

합신: 아뇨 아뇨 일단 그러면 신청을 이렇게 써주시죠 그러면 별도로 서류를 써주시죠. 직접 써주시지 왜. 직접 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증을 드리죠.

민변1: A4용지로 써주세요. 서신 제목하고.

합신: 접견신청서 뒷면에 쓰시죠 뭐.

민변1: 이것도 받아가겠습니다.

(종이 꺼내서 펜으로 쓰는 중)

민변3: 아니. 대한민국이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고 납득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밤새도록 다듬고 다듬어서 편지를 썼는데. 여기에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을지 몰라서 반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나가면 외신 기자들도 나와 있을 테고.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외신 기자들한테도? 서신에 유해물질이 있을까봐 못한다고. 외신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겠어요? 아 생각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변명을 하더라도 그럴 듯한 변명을 해야지 거기서 무슨 유해물질 얘기를 하고 그래요.

합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면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거듭 발송합니다. 제3자가. 관계없는 사람이 주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입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해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3자가. 어떤 사람이라든지, 내가 만약에 당신이 그 내 걸 받으쇼 한다고 해서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제3자가 주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민변3: 그럼 전달은 하십니까?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가지고 요구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내놓습니까? 전달도 안 하겠습니까? 다 보고 체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 유해물질 등?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변2: 규정이 보안이라고 하시면 최소한 유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는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검사 절차는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합신: 유해물질은 하나의 사례고 외부에서 제3자가.

민변4: 그러면 제3자가 주는 건 안 된다는 규정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규정 몇 조 몇 항입니까?

합신: 얘기 안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싸우려 드는데 말을 어찌 합니까?

민변3: 아니.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합신2: 반입 물품이죠. 이것도 반입 물품 아닙니까.

민변3: 아 거 반입 물품은 다 안 된다 하는 겁니까?

합신2: 아 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사람이 주는지가 중요하다. 아무나 주는 건.

민변3: 그러면 만나가지고 의사를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민변2: 내용 중에 가족들이 몇 분 있지 않았습니까? 잡지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민변5: 결국 접수는 받지만 일체 전달은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죠?

민변1: 이 부분을 그럼 접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처리하겠다는 거죠.

(계속 물품목록 작성중)

합신1: 변호인 접견신청서도 그럼?

민변3: 아 당연하죠.

민변1: 책, 책은 어떡하죠? 책 제목을 써?

민변3: 규정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지금? 규정이 없어서. 변호인 접견신청서하고 서신하고 그걸 받긴 하겠지만 안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합신1: 아뇨, 거기에 따른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민변3: 아니 받지만 그건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합신1: 아니, 여러분은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죠.

민변3: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합신1: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각자 서명하시죠.

민변5: 일차적으로는 여기는 이런 데 받는데가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하셨다가. 이차적으로는 서면은 받겠다. 또 하나는 서적하고 편지는 받을까 말까에다가. 서적은 안 받고 편지지는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변3: 이게 일관되지 않고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그러는 거 이해 하는데. 아까 계속 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변5: 아무리 책임지고서 제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거지. 쟤 분이 이러시니까 서로 그러는 거 아녜요? 한 분이 책임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민변1: 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어느 부분은 수령하실 거예요? 서신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놓고 가요 다?

민변3: 유해물질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하하.

민변1: 다 수령하셨다가 반송을 하시든가 만약에 넣어드리면 넣어드렸다 이렇게.

민변5: 그게 제일 합리적인 거니까 그러세요. 접수를 하셨으니까.

민변1: 접견이 안 되더라도 이 의사를 전달해서 확인을 받아서 뭐, 거부면 거부다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걸 자세히 회신해달라는 거예요. 물품도 마찬가지로요. 일단 받아놓고 아니면 아예 우리가 했으나 검토 결과 제3자 서신이나 물품 일체 거부한다면 그렇게 해서 회신해서 반송을 다 해주시던가. 그러시면 되겠죠? 놓고 갑시다. 우리 이거 봉인도 안 했어요. 그냥 놓고 갑시다.

민변3: 아니, 목록을 받아야죠. 현장에서의 접견 신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나? 거부 이유가?

민변1: 응, 할 수 있어. 거부 이유는 민원 회신 받을 때 받으시다. 나갑시다. 일단, 수령하신 걸로 알고 갈게요. 이 서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거예요. 가시죠 그럼.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저희 마무리 기자회견하고 갈 테니까, 그 전에 뭐 반송할 거 빨리 주세요. 자 갑시다!

20160516 접견 요청 대화 녹취록

민변1: 이 안에 편지와 편지봉투가 있습니다. 밖으로 서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편지, 편지봉투를 넣었고요. 또, 신영복 선생님 책이라든가 안에 심심하신 분을 위해 책을 명치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만일 접견이라든가 제반 거부를 한 경우에서라도 저희가 서신으로 이분들이 안에서 어떤 상황에 있고 바깥 소식이라든가 신문 기사라든가 저희 변호인들의 서신을 변호인 명의로 해서 서신입니다. 바깥 소식을 알리는 서신이고, 또 여기에는 안에 있는 피구금자가 가져야할 각종 권리에 대한 알리즘을 넣었습니다. 이 서신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전달한 서신이 반드시 전달되리라 생각되고요. 변호인들이 제공하는 물품들이 12분 한분 한분께 전달해주시고, 혹시나 이름이 다른 분들이 있더라도 다 특정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선센터 책임자분께서 입장을 한 번 밝혀주시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녹취를 합시다. 녹취를 하든지, 가져가라든가, 수령을 하라. 아니면 어떤 입장을 되도록 하나 써 주시든가, 녹취를 하시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전에 불허 입장을 팩스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왔을 때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시는지, 아니면 그 입장을 철회하셔서 저희 접견을 보장해주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민변2: 그 전에 저도 한 가지 확인받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오늘 접견신청하신 열두 분이 여기 계시는 것은 맞나요? 그것부터 확인해주시겠어요? 계시는 게 맞는지.

합신: 정상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민변1: 선생님, 그럼 직책만 얘기해주시죠. 합선센터 책임자라든가.

합신: 원래 그건 못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민변1: 알겠습니다. 그러면 접견신청에 대한 입장 좀 밝혀주시시오.

합신: 접견신청, 이 모든 행위가 접견신청, 접견신청 이게 음

민변1: 그건 별개죠. 그 서류는 그럴 수 있지만.

합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접견신청을 다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변1: 예, 다시 하는 겁니다. 충분히 다시할 수 있죠. 왜냐면 시간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합신: 저희는 지난 번 심사회의에서 민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다시 그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서신에 대해서도 일종의 민원으로 제기?

민변1: 아뇨 변호인의 권리로.

합신: 하여튼 별개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서 접수를 하되,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저희 내부 규정상 위해 물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갖고 가 주시고.

민변1: 아니 스캔해서 수령하지 않으시는가요?

합신: 그 두 개 별개 행위에 대해서, 첫째 접견신청서에 대해서 다시 재신청하는 민원에 대해 접수를 하고 이후에 서신수수 뭐 서신수수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전달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변3: 여기 위험 물질이 있을지 모르니 반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민변1: 민원 접수증을 하나 해주십시오.

합신: 그럼 그 두가지 행위에 대해서

민변3: 아니, 이걸 검사를 하시고 위험물질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반입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합신: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민원으로 접수하셨으니까 그 민원에 대해 서류, 통지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민변3: 한 가지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걸 반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위험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을 못한다는 건지, 아니면 일체에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는 것인지?

합신: 위험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에서 이렇게 특히 제3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변3: 검사하시면 되잖아요?

합신: 제출한 물건에 대해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 거부하는 겁니다. 그 거부에 대해서는 오늘 민원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성의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죠?

민변1: 알겠습니다. 그럼 서신 거부, 물품 거부, 변호인이 아까 서신 있었으니까 서신도 거부하는 거죠?

합신: 그러니까 지금...

민변1: 아니 서신 있다고 여기 권리안내서랑

민변3: 아니 서신만 빼가지고

합신: 서신이든 뭐든 포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민변3: 아니 서신이 유해물질이란 말입니까?

합신: 아니 서신이든 뭐든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위는 모든 행위가 접견신청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민변3: 접견을 거부하시더라도 이거는 그분들에게 전달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합신: 그럼 물품은 가져가시고 그 서신, 물품,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호인 접견 다시 민원 제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변3: 아니 저희가 서신을 썼습니다. 지금 이 서신이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신: 그러니까 말씀 드리잖아요. 일단 민원으로 저희가 접수하고.

민변1: 서신을 접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합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민원으로 접수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 갖고 가시면 됩니다.

민변3: 이거도, 이거도? 편지거든요. 이거는 넣어주십사하는 겁니다.

합신: 물건에 대해서는 가져가 주시고,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걸 전달해 달라 하는 기타 민원으로 봐서 접수하겠습니다.

민변3: 그럼 접수 목록이나 작성해 가세요.

민변2: 그리고 한 가지,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변호인 접견 왔다는 걸 알고는 계신가요?

합신: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민변2: 모르는 건가요 밝힐 수 없는 건가요?

합신: 밝힐 수 없습니다.

민변2: 그분들의 의사는 어때요?

합신: 노코멘트입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노코멘트입니다.

민변2: 기존에는 그런 걸 다 말씀해주셨거든요.

합신: 이 자리에선 노코멘트입니다.

민변2: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건가요?

합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민변2: 그럼 바뀐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합신: 알려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민변1: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자필로라도 이 물품 목록이라도 확인 좀 해주셔야지.

합신: 아뇨 아뇨 일단 그러면 신청을 이렇게 써주시죠 그러면 별도로. 서류를 써주시죠. 직접 써주시지 왜. 직접 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증을 드리죠.

민변1: A4용지로 써주세요. 서신 제목하고.

합신: 접견신청서 뒷면에 쓰시죠 뭐.

민변1: 이것도 받아가겠습니다.

(종이 꺼내서 펜으로 쓰는 중)

민변3: 아니, 대한민국이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고 납득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밤새도록 다듬고 다듬어서 편지를 썼는데. 여기에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을지 몰라서 반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나가면 외신 기자들도 나와 있을 테고.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외신 기자들한테도? 서신에 유해물질이 있을까봐 못한다고. 외신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겠어요? 아 생각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변명을 하더라도 그럴 듯한 변명을 해야지 거기서 무슨 유해물질 얘기를 하고 그래요.

합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면 위험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거듭 발송합니다. 제3자가. 관계없는 사람이 주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입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험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3자가. 어떤 사람이라든지. 내가 만약에 당신이 그 내 걸 받으쇼 한다고 해서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제3자가 주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민변3: 그럼 전달은 하십니까?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가지고 요구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내놓습니까? 전달도 안 하십니까? 다 보고 체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 유해물질 등?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변2: 규정이 보안이라고 하시면 최소한 유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는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검사 절차는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합신: 유해물질은 하나의 사례고 외부에서 제3자가.

민변4: 그러면 제3자가 주는 건 안 된다는 규정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규정 몇 조 몇 항입니까?

합신: 얘기 안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싸우려 드는데 말을 어찌 합니까?

민변3: 아니.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합신2: 반입 물품이죠. 이것도 반입 물품 아닙니까.

민변3: 아 거 반입 물품은 다 안 된다 하는 겁니까?

합신2: 아 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사람이 주는지가 중요하다. 아무나 주는 건.

민변3: 그러면 만나가지고 의사를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민변2: 내용 중에 가족들이 몇 분 있지 않았습니까? 잡지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민변5: 결국 접수는 받지만 일체 전달은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죠?

민변1: 이 부분을 그럼 접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처리하겠다는 거죠.

(계속 물품목록 작성중)

합신1: 변호인 접견신청서도 그럼?

민변3: 아 당연하죠.

민변1: 책. 책은 어떡하죠? 책 제목을 써?

민변3: 규정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지금? 규정이 없어서. 변호인 접견신청서하고 서신하고 그걸 받긴 하겠지만 안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합신1: 아뇨. 거기에 따른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민변3: 아니 받지만 그건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합신1: 아니. 여러분은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죠.

민변3: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합신1: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각자 서명하시죠.

민변5: 일차적으로는 여기는 이런 데 받는게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하셨다가. 이차적으로는 서면은 받겠다. 또 하나는 서적하고 편지는 받을까 말까에다가. 서적은 안 받고 편지지는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변3: 이게 일관되지 않고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그러는 거 이해 하는데. 아까 계속 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변5: 아무리 책임지고서 제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거지. 센 분이 이러시니까 서로 그러는 거 아녜요? 한 분이 책임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민변1: 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어느 부분은 수령하실 거예요? 서신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놓고 가요 다?

민변3: 유해물질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하하.

민변1: 다 수령하셨다가 반송을 하시든가 만약에 넣어드리면 넣어드렸다 이렇게.

민변5: 그게 제일 합리적인 거니까 그러세요. 접수를 하셨으니까.

민변1: 접견이 안 되더라도 이 의사를 전달해서 확인을 받아서 뭐. 거부면 거부다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걸 자세히 회신해달라는 거예요. 물품도 마찬가지로요. 일단 받아놓고 아니면 아예 우리가 했으나 검토 결과 제3자 서신이나 물품 일체 거부한다면 그렇게 해서 회신해서 반송을 다 해주시던가. 그러시면 되겠죠? 놓고 갑니다. 우리 이거 봉인도 안 했어요. 그냥 놓고 갑시다.

민변3: 아니. 목록을 받아야죠. 현장에서의 접견 신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나? 거부 이유가?

민변1: 응. 할 수 있어. 거부 이유는 민원 회신 받을 때 받으시다. 나갑시다. 일단. 수령하신 걸로 알고 갈게요. 이 서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거예요. 가지죠 그럼.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저희 마무리 기자회견하고 갈 테니까. 그 전에 뭐 반송할 거 빨리 주세요. 자 갑시다!

3



정치 > 통일

정부 "北종업원 집단 귀순은 자유 의사...가족대면 불가"

北 적십자회 명의 "종업원 가족들 서울로 보내겠다" 통지문에 수용불가 입장 밝혀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6-04-22 17:05:49 송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4.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는 북한 적십자회(북적)가 귀순한 북한 식당 종업원의 가족들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보내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 위원장 명의 통지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이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북적 중앙위 위원장 명의의 통지에 따른 가족 대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서울에서 종업원들과 가족간 대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지금 사랑하는 자식들과 생리별당한 우리 가족들은 자기 자식들과 직접대면시켜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절절한 요청에 따라 그들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내보내기로 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엄중히 통지하는 바"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300 인쇄하기

정부 "北종업원 집단귀순, 자유의사 따른 것" 가족대면 요구 거부

[the300]北 적십자회 "서울에서 탈북 종업원들과 가족간 대면 이뤄지도록 조치 취하라"

박소연 기자 | 입력: 2016.04.22 17:23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스1

정부는 2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북적 중앙위 위원장 명의의 통지에 따른 가족 대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적 중앙위 위원장 명의 통지 관련 정부 입장'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충복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국제관례나 뭐니하는 부당한 구실밑에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은폐하려 할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측 가족들이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서 종업원들과 가족간 대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조치를 즉각 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달했다.

다만 통신은 통지문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아직 적십자회로부터 통지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또한 리 위원장이 "국정원 깡패들은 중국현지의 거간군들과 공모하여 백주에 우리 국민들을 가장 비열하고 야만적인 수법으로 귀족지역으로 납치해갔다"며 "집단탈북이니, 자유의사니 뭐니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억류시켜놓고 그들을 송환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마저 전면부정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며 송고한 인도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북한 적십자회는 전날에도 중앙위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귀순한 13명의 가족 대면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에 대해 "이번 집단 귀순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적 관례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 당국은 같은 날 평양에서 집단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의 동료 7명과 미국 CNN방송의 인터뷰를 허용하고 이번 사건이 한국 정부에 의한 유인 납치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은 동료들이 식당 지배인에게 속아 한국에 갔으며, 식당 지배인과 한국에서 온 사업가가 이번 '유인 납치'를 함께 기획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42217157626075>

정부, 北 '탈북 종업원-가족 대면' 요구에 "수용할 수 없다"(종합)

기사입력 2016/04/21 13:26 송고



"본인 자유의사,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례 고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부는 21일 북한이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들과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간 대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면서 "북한이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들의 가족 대면을 요구한 것은 본인들의 희망과 자유의사, 그리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례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에서 "사랑하는 딸들을 백주에 유인납치당한 우리 가족들은 지금 한시바빠 꿈결에도 보고싶은 자식들과 직접대면시켜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성명은 "우리는 가족들의 절절한 요구에 따라 그들이 자식들과 직접 만나보도록 하기 위해 판문점 또는 필요하다면 서울에까지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북을 '남한 당국의 지시에 따른 납치'라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은 자의에 의해 탈북해 국내 입국한 것으로 북한의 납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돌아간 나머지 북한식당 종업원 7명에 대해 사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집단 탈북해 귀순한 종업원들과 같은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했던 7명의 여종업원은 평양에서 CNN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

CNN은 자사 평양 주재 특파원이 지난 18일 이들과 고려호텔 로비에서 만났다면서 집단 탈출자들의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종업원 7명은 이 인터뷰에서 이번 집단 탈북 사건이 남한 당국의 지시하에 한국의 한 사업가와 북한 지배인이 짜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4/21 18:26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